

의안번호	2219565
의 퇴 인	김태선 의원
회 답 일	2026. 9. 1.
추계번호	26A312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2	안 제25조의14(보급사업)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5조의14(보급사업)	

2. 상세 사유

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안 제18조)

- 안 제18조제5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의 상한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면 임대료 수입이 추가로 감소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

음

- 다만,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하는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임대료 수입 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의 향후 국유재산 임대 규모와 임대료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수소산업 기업체 수는 2,932개, 매출액은 14조 2,858억원, 투자액은 4조 3,373억원 수준임

[표 1] 수소산업 기업체 수, 매출액 및 투자액 현황(2024년)

구 분	기업체 수(개)	매출액(억원)	투자액(억원)		
			소계	연구개발비	시설투자비
수소생산	412	31,975	11,793	654	11,139
수소유통	833	13,676	3,920	365	3,555
수소활용	1,261	87,433	11,251	1,753	9,498
수소관련서비스	426	9,774	16,408	5,439	10,970
합 계	2,932	142,858	43,373	8,212	35,162

자료: 국가데이터처

나. 보급사업(안 제25조의14)

□ 안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관련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이 포함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동 규정 역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법 제25조의14에 근거한 보급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

아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